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

1. 관련 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1056(2022.2.28.) 호
2.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 내용 :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* 추가

- (추가 대상) **출발일(해외→한국)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, 치료(격리해제)가 확인된 내국인**(37.5℃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)

※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(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등)은 현행 유지

나. 시행일 : '22. 3. 7.(월)(한국시간 기준)부터 적용

다. 기타사항 : 대상 확인 기준, 입국 후 절차 등 안내자료(국·영문) 추가 배포 예정

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(국·영문)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

주무관

김유진

행정사무관

김미희

코로나19대응학교전결 2022.3.2.

상황총괄과장 최보영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-731 (2022. 3. 2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14동 (어진동)

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7142 팩스번호 044-203-7079 / kyj2126@korea.kr

/ 대국민 공개